

한국의 가족문제와 가족복지의 방향

— 농민의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

김 홍 주*

- I. 머리말
- II. 농민가족의 변화과정
- III. 농민의 가족의 변화양상과 가족문제 실태
- IV. 가족복지의 방향
- V. 맺는말

I. 머리말

현대사회에서 가족변화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가족문제는 개별가족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족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사회통제의 원초적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며(Morgan, 1985 : 74), 따라서 가족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Gittens, 1985 : 155). 한국사회의 가족변화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산업화의 역사 만큼이나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과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가족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가족문제가 단순히 개별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인식은 이에 대한 사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한다. 서구사회의 경우, 1960년대 격변기의 가족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과정이 가족복지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Cohen & Connery, 1967 : 6). 가족의 재발견이라고 말하여지는(Kamerman & Kahn, 1976 : 181) 가족정책은 가족이 가지는 적극적인 가치를 중시하여 문제를 안고 있는 개별 대상자 *person*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가족 *family as a whole*”이라는 가족개념을 바탕으로 가족에 “대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의 경우도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국가에 의한 다양한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가족복지에 접근하는

* 서울시립대강사, 사회학

관점의 한계로 인해 정책시행의 결과가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역설적이게도 가족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다시 말해 가족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장치로 작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¹⁾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가족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시각의 한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가족문제에 대한 통념은 산업화에 의한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주의적 가치체계가 개인주의적 가치체계로 빠르게 전화되는 과정에서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핵가족이 증가함으로써 1)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어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며, 2)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독신·동거의 형태와 이혼 및 사별로 인한 편부모 가족이라는 “문제가족”이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으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사회화, 가사노동에 공백이 생기고 가부장권이 약화되는 현상 등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무엇보다도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옹호 운동 Pro-family movement”²⁾을 통해 정상 가족의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문제가족”과 “문제가족이 있는 개인”에 대한 복지정책

을 실시하여 개별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시각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한국사회의 가족변화가 과연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³⁾ 우리의 가족변화는 가족유형의 측면만을 보면 핵가족의 형태를 보인다 해도 가족생활의 물질 토대, 가족관계 등의 측면을 고려해보면 전형적인 핵가족 *monolithic nuclear family*이 아닌 경우가 많다.⁴⁾ 산업화라는 외부의 변화압력에 의해 야기되는 가족생활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가족차원의 대응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가족화에 의한 가족문제 발생”의 도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변화의 특징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여 가족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를 알아야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가족을 생물학적·초역사적·초계급적인 보편성을 지닌 하나의 단위 *the family*로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최근의 비판적 관점에 의한 가족연구는 1) 사회의 제 세력간의 역학관계속에서 계급별로 가족생활의 경험과 가족변화의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 2) 가족구성원간에도 성(性)과 연령(세대)에 따라 가족생활의 경

1) 이 외에도 가족정책의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복지수혜의 계층·지역별 편향성의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홍주(1994 : 60~64)의 논고를 참고할 것

2) 가족옹호 운동은 마르크시즘과 페미니즘 등 비판적 관점의 가족연구와 이의 정치적 공색인 반(反)가족운동 *anti-family movement*에 대하여 가족의 와해를 막기 위해 도덕성에 근거한 전형적인 가족형태의 복원과 지속을 강조하는 정치운동이다. 이 운동의 동기는 “허용”이 “타락”으로 갈 수 있다는 전통주의자의 우려, 페미니스트에 대한 남성의 반발, 가족이 복지의 기본 단위라는 통념을 강조하여 실업 및 가중되는 복지욕구를 가족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적 우익집단의 시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반가족운동은 60년대 이후 강하게 서구사상을 취한 반(反)문화운동과 연결되어 개인의 자유와 상호협상에 근거한 가족형태의 다양성(동거, 동성연애, 독신 등)을 강조하는 좌익과 여성단체의 정치공세이다.

3) 기존의 가족연구는 전통적인 직계가족이 감소하고 핵가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됨 결과 계급·지역 등에 관계없이 핵가족이 보편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보고 되고 있다. 장현섭(1993 : 48)의 분석에 의하면, 학술논저총합색인(1987)의 가족 부분에 수록된 해방 이후의 가족연구 600여 편 대부분이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였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가정에 더하여 자신들의 논지를 전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4)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논고로는 최재석(1982), 안병철(1989), 안호용(1991), 장정섭(1991, 1992), 김홍주(1993, 1994), 장현섭(1993) 등이 있다.

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김홍주, 1993). 예컨대, 1) 타락한 성의 모습을 보이는 동거의 형태는 분명 문제이지만 생계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차원에서 동거의 형태를 취하는 공동 주변의 노동자들과 자살까지 불러오는 농촌 총각의 결혼난 때문에 동거의 형태라도 가족을 형성하려는 경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족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며, 2)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혼 자체가 문제의 해결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보편성에 편중되어 부각되는 일상의 가족생활의 모습은 특정 계층·성(性)에 한정된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개념을 계급·성·연령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경험되는 가족들 *families*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⁵⁾ 여기에서 우리의 가족문제가 전체 사회의 모순구조가 반영되어 가족들과 가족원간에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관계에서의 문제 *question*”임을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행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정책방향은 “가족을 통한 복지 *welfare through the family*” 개념⁶⁾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는 가족이 스스로의 부양체제를 작동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병약자 등의 안녕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가족관점에 시작되는 것인데, 국가의 정책목표는 부양체제의 작동에 문제가 있는 가족을 선별

적으로 지원하여 가족이 복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가 복지비용(재정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자유방임적 복지체제를 작동하는 편리한 수단으로서 가족의 복지기능만을 강조하는 논리는 국가의 복지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이데올로기에 다름아니다. 우리의 열악한 복지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보호의 가족정책이 역설적으로 또 다른 내용의 가족변화와 가족문제를 유도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부양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족생활의 물질적 기반이 취약한 노동자·도시빈민 등의 가족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부양의 현실도 단칸방에서 3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형태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부모세대는 자녀의 부양 책임의 방기를 문제삼기보다는 이들의 열악한 물질적 기반에 대해 한없는 애정을 보이며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함에도 가족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주력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가족에게는 심리적 확대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족원의 고통이라는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의문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농민가족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터하여 모든 가족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족복지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5) Gittens(1985 : 2)에 의하면, 가족은 계급별로 물질적 생활의 기반이 다르며, 개별 가족차원에서도 가족원의 성별·연령별 차이에 따라 가족생활의 형태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가족내 구성원 간, 가족간의 불평등이 내재된 공간으로 파악되어 진다. 특히 서구 가족사 연구의 결과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가족의 변화가 계급·성·연령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Anderson, 1980).

6) 가족복지는 가족을 위한 복지 *welfare for the family*와 가족을 통한 복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건강한 가족이 정책목표가 되며 국가는 모든 가족들이 성원간의 상호부양을 물질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가족이 노인, 아동, 장애인, 병약자 등의 안녕을 돕기 위한 정책도구가 되는 것으로 국가는 이같은 복지수요자들에 대한 부양의사와 능력을 가진 가족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이다(장경섭, 1992 : 185~186).

다. 여기에서 농민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1) 이들의 가족문제가 단순히 가족기능의 약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족간 *families*에, 그리고 가족원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가족생활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2) 가족문제의 발생이 단순히 가족원의 이탈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구조가 가족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한국 가족 문제의 특징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농민의 가족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1) 문제의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농민가족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추적할 것이며(2장), 2) 현단계 가족문제가 가족변화의 결과 가족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3장). 여기에서 농민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족복지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4장).

II. 농민가족의 변화과정

1. 변화과정의 분석틀

농민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⁷⁾는 핵가족화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산업화와 가족변화의 관계를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를테면, 산업화는 농가인구의 유출을 유도하며 이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가 가족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가족구성의 변화가 가족생활의 내용을 변화시킨다는 도식이다. 이러한 분석모델은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나름대로의 유용성은 있겠지만, 산업화라는 추상적인 힘만을 가족변화의 동인으로 상정하는 과도한 구조주

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가족을 산업화에 단순히 적응하여 변화하는 수동체로 파악하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동태와 사회적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아무런 매개없이 농촌가족의 변화라는 일정한 사회적 효과 *effects*를 가져왔다는 설명은 지나친 결정론적 도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가족의 변화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변화요인의 거시(구조)와 미시(행위)의 연계 *macro-micro linkage* 과정과 그 동학을 하나의 틀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를 설명하는 데 과도한 구조주의의 한계와 내부의 미시적 요인에 편향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국가의 농업정책과 가족정책이 농가의 생산체제와 재생산 부문에 변화압력으로서 작동하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에 치우칠 경우 변화의 역동적 과정을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변화의 행위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필요하다. 여기에는 농가의 변화를 유도하는 외부의 구조적 압력에 대응하여 생계를 유지하려는 가족 차원의 전략 *family strategy*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농가의 경우 외부의 변화 압력이 농민 개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즉 “구조-개인”의 관계보다는 가족에 의해 매개되어지는 “구조-가족-개인”의 관계에서 가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결과가 가족문제로 표출되어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가족이 생산 및 재생산활동에서 보여주는 전략의 내용과 그 결과를 분석하면 농민가족의 변화가 이루어지

7) 농민가족의 변화에 관련된 연구의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홍주(1994: 5~9)를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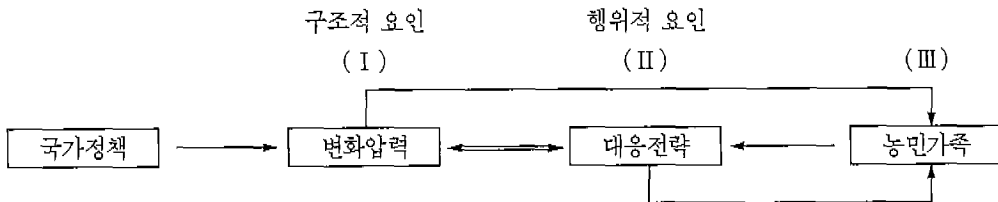
는 구체적인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 전략개념은 구조와 행위의 연계과정과 그 동학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Shmink, 1984; Crow, 198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요한 분석적 개념

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농민가족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농민가족 변화의 메커니즘



위의 분석틀은 농민가족(Ⅲ)의 변화를 가져오는 두 가지 요인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구조적 요인(Ⅰ)으로 국가의 농업정책과 가족정책이 포함되며, 다른 하나는 행위적 요인(Ⅱ)으로 농민이 외부의 변화압력에 대응하고자 가족의 틀을 이용하는 다양한 전략이 포함된다.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농민가족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은 단선적인 인과적 관계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외부의 변화압력과 이에 대한 농가의 대응전략이 하나의 동학관계(Ⅰ↔Ⅱ의 공간)를 이루며, 이 결과가 변화요인의 작동을 규제할 수 있다. 변화압력의 정도에 따라 전략의 내용이 결정되며, 역으로 전략의 실행가능성이 압력의 정도를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농민가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변화과정 1 : 구조적 요인이 농가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Ⅰ→Ⅲ)

한국의 농업생산체제는 그 내용이 많이 변형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농 형태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농의 지속경향은 농업생산에 투하되는 대부분 비자본주의적 노동형태 *non-wage labor*인 가족노동이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현재 가족노동의 형태는 전체 농업노동의 82.8%를 차지하여 1962년의 71.5%의 구성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고용노동은 동일기간에 20.2%에서 11.7%로 감소하고 있다(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이는 우리의 농업 노동과정이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보다는 가족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하나의 단위로서 가족이 생산의 주체가 되는 가족농 생산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농가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생산의 단위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가족생활이 농업생산체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생산체제는 가족생활의 질 *quality of family life*을 결정하는 물적 기

8) 그러나 가족전략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성별·연령별 질서가 체계화된 통일체로 인식하는 접근방법이기 때문에 “가족 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내적 동학 *internal dynamics*을 간과하는 한계를 내포하기도 한다. 또한 농가 변화의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간과한 채 주로 물질적·경제적 요인만을 주시하는 한계가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Hareven, 1987; Crow, 1989).

반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연속성(재생산활동)을 규정하는 일차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농가의 생산활동을 지배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압력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것은 국가의 농업정책에 내포된 농업생산 잉여의 이전을 강요하는 과정이다. 이 때의 국가는 계급실천의 기제로서 한편으로 개별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한 사회재생산의 총과정을 원활히 진행시키는 총자본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농업정책에는 자본의 축적 조건⁹⁾으로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 즉 자본의 농업지배 내용인 1) 값싼 식량 및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2)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 3) 공산품 및 농업원자재에 대한 국내 시장 형성, 4) 지대와 개발수익을 위한 토지소유 등¹⁰⁾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경제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농업정책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농업부문에서 다양한 경로의 잉여이전을 통해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구조를 재생산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농업생산체제를 적절히 변형시키고자 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농업의 자본주의적 경영을 통해 직접 잉여가치를 획득하는 방식보다는 자금형의 가족농형태를 단순상품생산형태로 변형시켜 1) 저임노동력의 공급, 2) 저농산물가격을 통한 저임노동력의 유지, 3) 도시로 이동한 개별 가족원의 생계유지의 발판, 4) 다양한 시장기제

의 이용 등을 통해 잉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농업부문에서 “산업화의 비용 *costs of industrialization*”을 충당하였던 것이다. 물론 농업부문에서 잉여이전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축적위기의 성격이나 농민가족의 대응전략과 저항수준에 따라 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¹¹⁾ 그러나 이의 기본 내용은 1) 국가의 가격정책과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저임금구조의 유지와 노동시장의 수급조절을 통하는 방식, 2) 농업을 단순상품생산형태로 유지시켜 시장기제(농업원자재시장, 토지시장)를 이용하는 방식, 3) 수입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독점하는 방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잉여의 과도한 이전은 생산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다음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가경제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곧, 1)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업노동력의 재생산구조가 와해되고(가족해체의 문제), 2) 농업생산을 통한 노동가치의 실현이 저지되며(생산과정의 문제), 3) 농업소득으로 가족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겸업농과 부채농이 증가하고(가족농체제의 붕괴문제), 4) 농가경제의 악화로 표현되는 농가 전반의 궁핍화(가족생활의 빈곤문제)가 심화되는 생산체제의 붕괴과정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가족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물질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의 가족정책은 가족이 스스로 부양체

9) Goodman과 Redclift(1982)은 산업화를 통한 자본 축적의 제일 조건이 농업잉여의 빠른 이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본은 농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농업지배의 다양한 전략을 세우며, 국가는 이에 대한 실현 기제로서 농업정책을 통해 자본 이해 관철의 물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의 자세한 논의는 Friedman(1980, 1986), Bernstein(1979, 1988) 등의 논고를 참고할 것.

10) de Janvry(1981)는 이를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토지시장으로 구분하여 잉여이전의 과정이 시장기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11) 농업정책 전개과정의 시기는 국가통제의 수준, 자본의 발전수준, 농민의 저항수준 등에 따라 대개 1) 저농산물가격과 증산농정기(1962년~1976년), 2) 개방농정기 1(1977년~1987년), 3) 개방농정기 2(1988년~현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는 김홍주(1994)를 참고할 것.

〈표 1〉 농가경제 주요지표(호당평균)의 변화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1965	1970	1980	1990	1992
농업조수입(A)	115.99	248.06	2342.17	9077.95	10777.89
농업경영비	27.18	54.03	587.35	2814.06	3421.67
농업소득(B)	88.81	194.04	1754.82	6263.89	7356.22
농업소득율(B/A, %)	76.60	78.20	74.90	69.00	68.40
농가가계비(C)	100.49	207.77	2138.32	8227.21	10045.96
가계비충족도(B/C)	88.40	93.40	82.10	76.10	73.20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제를 작동하여 요보호의 가족원, 특히 노인과 아동 등의 안녕을 도모하는 가족을 통한 복지 *welfare through the family* 개념에 입각하며, 그나마 실시여건을 빌미로 도시편향 *urban bias*의 지역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업화의 사회경제적 전환비용을 담당하면서 가족생활의 물질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던 농민가족은 이들의 정당한 복지욕구가 외면당하면서 또 다시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결과로 가족생활의 연속성을 위한 자녀의 출산과 사회화, 계승, 노인부양 등의 재생산 주기 *family reproduction cycle*가 와해되고 있으며, 이 현상이 바로 농민가족의 변화과정이다. 한 마디로 가족보호의 국가정책이 농가의 생존현실과 커다란 격차를 이루는 규범으로써 이데올로기적 통제장치로 작동하여 농가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

3. 변화과정 2 : 농가의 대응전략이 농가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Ⅱ→Ⅲ)

국가정책이 농가의 생산과 재생산체계의 위기를 유도하는 외부의 구조적 압력이라면, 농민은 이러한 위기에 대해 가족이라는 집합적 단위 *collective unit*를 매개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선택하

면서 농업생산의 지속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려 하였다. 농민에게 있어 가족은 1)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세대간 재생산의 기본 단위이며, 2) 생산의 단위로서 외부로의 잉여이전 메카니즘에 의해 가치의 실현이 상실된 전자본주의적 무임금노동과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 *unpaid domestic labor*을 적절히 조정·통제하면서 농업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민가족은 생계수단인 가족노동력과 토지 및 생산도구를 가부장적 원리에 기초하여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전략으로 농업생산의 위기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가족생활의 궁핍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때로는 가족원 전체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경작규모를 확대하여 소득작물을 증산하고자 했으며(경제활동의 다양화 전략), 때로는 가족원을 도시로 이동시켜 가족소비의 극소화를 꾀하거나 이들의 소득을 가족차원에서 결합하여 궁핍화에 대응하고자 했고(이동전략), 때로는 최소한의 노동력재생산도 위협받을 정도로 가족소비를 줄이는 방식(소비극소화 전략)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현재의 농민은 강도높은 외부의 지배전략에 의한 농업생산과 가족생활의 위기를 소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족단위 대응

12) 농민복지의 흐름과 논리, 그리고 그 결과가 농민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이후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전략으로 최소화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농민의 생계유지 전략은 일정 기간 자신의 생산 및 재생산 체계를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결과가 외형적인 측면에서 가족농 형태의 지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행위는 농민의 가족생활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여 다양한 가족문제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활동의 다양화는 토지라는 기본 생산수단과 농외취업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잔존하는 가족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1) 소작지의 규모를 늘리거나, 2) 상업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잔존하는 가족노동력을 마지막까지 연소하면서 생계를 위한 전략의 실행과정은 농민가족에게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하나는 농업 노동력구조의 노령화·여성화로 상징되는 질적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의 증가로 상징되는 농업 노동조건을 악화이다. 농업노동의 내용은 농업생산의 현실을 반영함과 더불어 이의 주체인 농민가족의 “삶의 질”을 일차적으로 규정한다(김홍주, 1992). 농민가족은 여타 계급의 경우와는 달리 생산의 기본단위이며, 이에 따라 농민의 생산활동이 곧 가족생활로 이어지는 경제적·사회적 소재지 locus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행위의 실행결과로서 나타나는 노동조건을 악화는 1) 가족생활의 질을 떨어뜨려 다양한 문제에 노출시키며, 2) 농

가인구의 압출요인을 창출하여 농민가족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3) 농가의 계승체계를 위협하여 가족해체를 유도하는 결과¹³⁾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가족원의 일부(특히 자녀)를 도시로 이동하게 하여 1) 이들의 임금을 가족단위로 결합하거나(소득 극대화 전략), 2) 가족내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으로 줄여 가계의 소득과 소비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가족생계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이동전략 *mobility strategy*은 가족 구성원의 빠른 방출로 연결되었다. 이 결과는 1) 가구 구성의 축소와 해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2) 잔존 가족노동력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가족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전략의 실행 과정이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근거하여 「딸」들에게 빠른 방출을 강요하는 성별 차별성, 장남과 이하 자녀간에 다른 차원의 전략형태를 강요하는 연령별 차별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여기에 부모의 강압적인 통제과정이 작용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유대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농가의 확대재생산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현실에 대해 농민은 자녀, 그 중에서도 남자—장자(長子) 위주의 교육을 통해 가족 전체의 상승을 꾀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원들(특히 딸)은 이를 위해 희생할 수 밖에 없었다.¹⁴⁾ 전체가족의 전략 형태 *family form of strategy*와 개별 가족원의 전략형태 *individual form of strategy*와의 차이¹⁵⁾를 가져오며, 이는 곧 가족관계망이 일부의 희생과 고통이라는 문제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온

13) 1993년의 전국 조사(김일철 김홍주, 1993)에서 농촌 총각의 결혼난 원인을 질문한 결과 전체(540명)의 43.3%가 “힘든 농사일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결혼이 가족형성의 시발점이며 가족원을 재생산하여 사회의 연속성을 계승하는 제도적 장치로 볼 때, 농업노동의 성격이 농가의 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교육·생활·소비권 등의 접근기회에서 장남과 그 이하의 자녀,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에 의한 가족원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가부장적 질서에 근거한 통제전략을 의미한다. Greven(1970)과 Smith(1973) 등의 인류학자는 이를 혼합전략 *mixed strategy*으로 개념화하는데, 이들은 부모가 자녀들 중 한명(대개 장남)에게 가계계승의 역할을 기대하며 그에 따라 자원 및 결혼압력 강도를 형제간에 불균형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것이다. 이 과정이 “가족전략→가족변화↔가족문제”의 전형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극소화의 가족생활은 가족의 소유자원인 토지와 노동력의 결합 및 최대한의 활용을 통해 가족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내외적인 조건으로 한계에 봉착할 때, 농민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자기착취 *self-exploitation*에 의한 생존전략이다. 경제활동의 다양화 전략이 양질의 가족노동력을 자기 착취하는 형태로 가족생활의 물질 토대를 만들어 간다면, 소비극소화 전략은 가족원의 일상생활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소비생활을 거의 포기하는 자기 착취의 형태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는 농가는 가족주기상 축소형이나 해체형에 해당하는 고령의 부부가족이나 노인단독가구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충족을 위한 지출외에는 거의 모든 소비생활이 억제되어 있어 가족생활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홍주, 1994). 이러한 소비극소화 전략은 곧 가족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이 정서적 안정의 단위로서 애정에 기반한 안식처이기 보다는 생존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작업장과 다를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구의 가족사에서 가족전략의 목표는 가족생활의 물질 토대를 침해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외부의 구조적 압력에 대해 가족 차원의 다양한 대응으로 기존의 가족생활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여부

는 외부 압력의 강도와 대응전략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다(Tilly & Scott, 1975). 그러나 우리의 농민가족에 대한 변화 압력은 생산 및 재생산체계의 해체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강도가 심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농민의 가족전략은 과도한 자기 착취 *self-exploitation*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결과는 농민가족의 변화를 왜곡된 형태로 유도하였으며, 이는 곧 가족의 위기라는 가족문제로 표출되었다. 한 마디로 산업화에 적합한 가족형태, 즉 핵가족으로의 변화라는 도식과는 경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문제는 개인 차원의 일탈문제가 아닌 구조적 차원의 모순구조에 의해 가족생활의 물질적 기반이 훼손되어 농민 개개인이 고통받는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가족문제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III. 농민가족의 변화양상과 가족문제 실태

1. 가족능 형태의 변형과 빈곤문제

가족능 생산형태의 변형은 농업지배의 구조적 압력과 이에 대응하는 농민가족의 다양한 전략과의 동역관계에서 유도되어 진다. 여기에서 “변형”이라는 의미는 가족능 체제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략행위의 실행과정에서 그 내용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구조적 변화압력의 강도가 높기 때문이 농가의 대응 전략은 생계유지의 단순재생산 지향으로 모아지며, 이는 곧 농업에서 생산되는 잉여가 과중

15) 전체가족의 수준이 아닌 개인의 생애주기에 의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교육의 차이에 의한 가족원들 생활의 변이가능성 때문에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을 졸업한 가족원은 이에 걸맞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희생한 가족원의 미래는 대학나온 가족원이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Hogan(1981)은 개인생애가 이전에 경험한 다양한 결정요인(특히 교육)에 의해 귀결되어 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족전략의 갈등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생활주기전망 *life-course perspective*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하게 이전되는 과정이기에 생산체계의 해체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농의 변형은 다음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산주체의 공동화(空洞化), 소작농화, 겸업농화, 부채농화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주체의 공동화는 노동력구조를 변화시켜 가족농 생산형태의 노동과정을 변형시키는 중요한 요인을 창출한다. 이를 보면 1) 가족노동력의 동원 범위가 축

소되어 동원된 노동력의 과다활용(노동조건 악화 = 노동시간·노동강도 증가)을 유발시키고, 2) 가족주의의 원리에다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존의 논리가 결합되어 노동력이 조정·통제되며, 3) 농기계를 통한 임작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표 2> 가족농 생산형태의 변형내용

구 분	1965	1970	1980	1990	1992
(생산주체)					
농가인구(천명)	14559.27	14431.91	10826.75	6661.32	5706.79
농가호수(천호)	2349.51	2487.65	2155.07	1767.03	1640.85
호당인구(명)	6.20	5.80	5.02	3.77	3.48
(소작농화)					
소작지율 ¹⁾	15.1	17.2	21.3	37.4	37.2
소작농가비율	28.4	33.5	45.4	n.a	n.a
(겸업농화)					
농외소득비율 ²⁾	21.1	24.1	34.8	43.2	49.3
겸업농가비율	n.a	14.8	17.9	40.4	37.5
1종겸업 ³⁾	n.a	6.1	8.9	22.0	15.4
2종겸업	n.a	8.7	9.0	18.4	22.1
(부채농화)					
농가당부채(천원)	10.57	15.91	339.21	4734.40	5682.93

주: 1) 소작지율은 전체농가의 경작면적, 소작농가비율과 겸업농가비율은 전체농가의 호수(<표4-2> 참조)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농외소득에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을 제외한 겸업소득 + 사업외의 소득 + 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순수한 겸업소득 비율은 1965년 1.1%, 1970년 3.8%, 1980년 2.5%, 1990년 5.4%, 1992년 6.4% 임.

3) 1종겸업은 연간 총수입중 농업수입이 50% 이상인 농가이며, 2종겸업은 미만인 농가임.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소작농화와 겸업농화는 잔존하는 가족노동력을 이용하여 가족단위 소득을 극대화하려는 경제활동의 다양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주곡만을 경작하여 얻어지는 소득으로는 생계유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노동력을 마지막까지 연소하는 수단으로 임차지 구

모와 상업작물의 재배를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소작지와 소작농가, 그리고 농외소득과 겸업농가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소작농화는 토지소유와 가족단위 경영, 그리고 가족노동력이 일치되는 가족농 생산형태의 원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즉, 농민적 토지소유가 비농민

적 토지소유로 변화하며, 여기에 경영과 가족노동력이 결합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겸업농화는 1)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농가의 경영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것, 2) 가족노동력의 농업노동에의 이용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가족농적 생산의 원리가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부채농으로의 변화는 가족농 경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오늘의 농민가족이 경험하는 빈곤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농가부채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30만원대에 불과하였지만 1992년에는 약 568만원으로 증가하여 10여년동안 19배나 증가하고 있다(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이러한 농가부채의 증가는 농업생산의 위기에 대하여 소작규모나 겸업화를 진전시켜 가족농 형태를 변형하면서 대응하려 하였지만 단순재생산의 지향마저도 한계에 놓이게 될 정도로 가족농의 경영이 열악한 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농민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동원하여 소득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가계의 경영수지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며(〈표 1〉 참조), 이는 곧 농민가족이 생산의 측면이나 소비의 측면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상실하고 점차 빈농의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농민가족의 경제적 빈곤은 곧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 기반의 훼손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재생산활동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빈곤문제는 현재의 단순한

물질적 자원의 결핍과 이로 인한 가족원 개인차원의 고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빈곤상황이 개개인의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는 골칫덩어리의 문제 *problem*가 아니라,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우리 사회의 중첩된 모순구조가 농업위기를 가져오고 이의 결과가 빈곤상태로 이어지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 *question*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지배의 압력이 약화되지 않는 한 빈곤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 있다. 빈곤의 지속은 바로 가족의 가치는 최대의 기능으로서 사회재생산의 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인간생명의 유지·번식이 위기에 처하는 것으로 농민집단의 해체와 농업생산의 단절을 가져오는 사회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가족해체의 문제

농민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족구성원이 대거 이동하고, 이를 충원하는 재생산기제가 와해되어 가족구조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해체의 양상은 가구 세대깊이 *generation depth of family*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센서스 분석결과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전국 면부(面部)에서 나타나는 3세대 이상의 직계가구의 비율은 18.4%로 이는 1966년의 31.6%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세대와 단독가구의 비율은 26.5%(1966년은 4.3%)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16) 가족농 생산형태의 노동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1) 생산의 주체가 농가 *peasant household*이고, 2) 농가 스스로 소유하는 자원인 토지와 노동력이 가족단위로 결합되며, 3)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노동일과 노동강도가 결정 되고, 4) 가족노동력의 과 착취 *over-exploitation*에 기반하여 잉여가 창출 되며, 한계는 단순재생산에 필요한 비용까지이다(Banaji, 1977 : 32~33).

17) 농가의 빈곤상태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로는 김제홍(1988), 정병태 외(1989), 김익기(1991), 김홍주(1994) 등을 참고할 것.

이러한 구성비 변화는 그 만큼 세대 깊이가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1) 전체적으로 직계가족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가족부양체제가 붕괴되는 현실을 알려주고, 2) 농가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¹⁸⁾ “고령의 노인 단독가구” 및 “노부부만의 2인가구”가 증가하여 해체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농가 구조적 특질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유형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핵가족—직계가족의 분류방식은 중심부부의 연령, 가족주기, 가계계승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변화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필자가 조사한 자료¹⁹⁾를 가지고 1) “핵가족 I”(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며 자녀를 갖기전인 1세대 형성가족이나 2세대 팽창가족), 2) “핵가족 II”(자녀가 모두 이동한 1세대 축소형인 부부가구 또는 편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그리고 출산기를 끝내고 자녀가 이동하기 시작한 2세대 축소형의 가구), 3) “직계가족 I”(부부와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로 구성된 3세대 이상이며, 가계계승자가 장남인 가족), 4) “직계가족 II”(직계형을 이루되 2세대 축소형이거나 가계계승자가 차남이하인 가구), 5)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핵가족 I”과 “직계가족 I”의 형태는 이념형적(ideal-type) 가족유형으로 판별되며, 여타의 가족은 해

체의 과정에 놓여있거나 구성자체가 왜곡된 비이념형(non-ideal type)적 가족유형이 된다.²⁰⁾ 이러한 구분에 의하여 조사지역의 가족유형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이를 보면 1985년에도 이미 일반적인 의미의 변화 방향에서 벗어난 비이념형적 가족유형으로의 변화가 심각한 수준(63.6%)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93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념형적인 가족유형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비이념형적 유형이 73.8%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의 가족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조사지역에서 미혼의 자녀가 성혼(成婚)후 분가하는 일반적 의미의 가족 형성이 1977년 이후 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가족성원의 충원기제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반면에 기존의 가족성원은 연령단계에 따라 사망하거나 가족전략 차원에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이 결과로 전체 가족은 빠른 속도로 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해체는 가족이 지니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다는 해체로 인한 개별 가족원의 고통을 문제의 핵심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생계를 위한 전략으로 자녀를 도시로 떠나보낸 후 홀로 살거나 노부부만이 거주하는 경우²¹⁾ 이들의 가족생활의 질은 열악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동한 자녀의 불안

18) 1990년 센서스 자료에서 가족부양의 연령층인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을 보면 시부의 경우 3.6%인 데 비해 면부의 경우 10.3%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 기존의 센서스 자료는 자녀세대의 결혼여부, 중심부부의 연령, 가족주기 등이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히 필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사용한다. 조사 지역은 전라북도 임실군의 한 마을로 1985년에 처음 조사할 당시 77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1994년 2월에 조사할 당시는 61가구가 살고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홍주(1994)를 참고할 것.

20) 이념형, 비이념형의 범주는 1) 가치지향성의 문제, 2) 변화의 다양성을 간파하는 문제 등 비판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농민가족의 변화가 외부의 모순구조가 반영되어 일반적인 의미의 변화 방향과는 상이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한 범주를 설정하여 보았다.

21) 조사지역 전체 61가구중 노인 단독가구는 10호, 노부부만의 가구는 28호로서 62.3%에 이르고 있다.

〈표 3〉

조사지역의 가족유형의 변화추이

구 분	1985		1993	
	가 구 수	구 성 비	가 구 수	구 성 비
(이념형적 유형)	14	18.2	6	9.8
핵가족 I	5	6.5	2	3.3
직계가족 I	9	11.7	4	6.5
(비이념형적 유형)	49	63.6	45	73.8
핵가족 II	31	40.3	35	57.5
직계가족 II	16	20.7	6	9.8
기타	2	2.6	4	6.5
단독가구	14	18.2	10	16.4
합 계	77	100.0	61	100.0

정한 생활형편 때문에 가족부양체제에 기댈 수도 없는 처지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미 쇠잔한 노동력에 기대어 소규모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자녀의 부족한 송금을 가지고 소비를 극소화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극도의 빈곤집단이지만 가족부양을 강조하는 복지관점 때문에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가족에게는 소외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의 소외는 왜곡된 방향의 가족변화 과정에서 파생된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녀세대 대부분이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오늘날 이들의 관계는 가정이라는 동일 공간내에서 권위적 가족질서에 기반한 지배-복종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1) 가족이라는 이념적 공간에서 대부분의 가족관계가 형성되며²²⁾, 2) 관계 자체도 쌍무(雙務)내지

역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모의 위치가 관계의 핵심에서 주변으로 밀리게 되며, 여기에서 소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별거 가족원의 증가로 인한 “1가족 2가구”²³⁾의 형태로 결합해야 하는 가족들도 가족해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산업화의 경험상 가족전략 차원에서 도시로 이동한 자녀들의 정착과정은 순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생계유지도 어려울 만큼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산업화 과정이었다. 이에 따라 농촌의 부모들은 도시 자녀의 불안정한 생활의 안전판이 되어야 하는, 그리고 도시 자녀는 전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소비를 극소화하면서 송금을 해야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이동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세대는 자녀의 뒷바라지 때문에, 그리고 자녀 세대는 부모와 떨어져 스스로 생활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22) 한 부부의 자녀들이 도시로 이동해 성혼할 경우, 이들이 공간과 시간을 같이하는 가족관계는 오로지 상호 부부관계일 뿐,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부모-손자녀관계 등 대부분의 가족관계는 이념적 관계에 불과할 것이다.

23) 공간적으로 동거하지는 않지만 전체 가족차원에서 이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지역의 경우 전체 61가구중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비이념형적 가족유형에 해당하는 45호(73.8%)였다.

부담이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힘든 농사일과 열악한 농촌지역의 생활 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부인이 가출해버린 가족들의 고통이나²⁴⁾, 결혼을 하지 못한 총각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고통도 해체와 관련이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가족의 해체문제는 단순히 전통적인 가족규범의 해체에서 연유되는 가족원간의 결속력의 약화 내지 가족관계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다. 1) 해체로 이어지는 가족변화 자체가 농업 및 가족을 지배하려는 외부의 압력과 이에 적응하는 농민가족의 전략과정에서 파생되고 있으며, 2) 해체의 정도가 개별가족의 차원을 넘어 전체 농민집단의 재생산 기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3) 이로 인해 잔존 가족원은 가족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3. 재생산활동의 불안정 문제

농민가족은 그 자체가 생산의 주체로서 가족생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노동력을 모두 동원하기 때문에 가족생활의 대부분이 농업노동에 투하되고 있으며, 계절의 구분과 시간의 규정이 없는 노동과정의 특성에 따라 양질의 노동능력이 재생산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인 기반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다 농촌여성은 농민으로서 농업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성차별 기제의 지속에 의해 또 다시 가사노동의 전담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역할수행에 시달

리고 있다. 이 결과는 농민가족의 재생산활동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크게 자녀의 출산과 사회화 *procreation and socialization*, 계승 *succession*, 노인부양 *old-age support*의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²⁵⁾

먼저 가족해체 현실에 비추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가임기(可妊期) 여성의 모성(motherhood) 건강의 실태를 보면, 출산 활동의 기반이 과연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다. 임신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가 30~40% 정도 밖에 안되었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조사의 70%보다 훨씬 밑도는 산전관리의 수준이다. 산후관리도 사정은 비슷하여 출산후 84.5%의 여성이 검진을 받아본 경험 없었다. 또한 일주일도 안되는 산휴(産休) 기간 후에 74.9%의 여성이 가사활동에 참여하고 44.3%의 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7b: 121~147). 여성의 모성 건강은 한 사람만이 아닌 재생산체제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족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오늘의 농촌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뒤로 하고 생산과 가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들 개개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농가의 재생산체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현대의 아동 양육은 아동기 *childhood*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족을 매개로 아동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보호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농민가족의 아동은 양육주체

24) 조사지역의 경우 1993년 7월에 부인이 남편과 3자녀를 두고 가출한 사례와 1989년 11월 남편, 시어머니, 2자녀를 두고 “농사일이 힘들어 도저히 살 수 없다. 찾지 말라”라는 쪽지를 남기고 가출한 사례 등 2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의 가족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홍주(1994)를 참고할 것.

25) 재생산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1) 가족원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생물학적 활동, 2) 가족관계의 연령별 성별 질서의 유지와 관련되는 이념적 활동, 3) 가계의 계승과 관련된 도구적 활동 등으로 구분된다(Laslett & Brenner, 1989).

의 상실로 인하여 모성에 기반한 건강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1986년에 383명의 전국 농촌여성에게 농사일을 나갈 때 아동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부모가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혼자 내버려 둔다”가 32.1%, “농사일을 나갈때 데리고 간다”가 14.4%를 차지하고 있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7a : 102~103). 이를 보면 대부분의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혼자 내버려 두는 방치 상태가 32.1%에 이른다는 사실은 농민가족에게 양육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농촌탁아소의 설치와 같은 “양육의 사회화”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복지욕구가 깊게 내재되어 있다(김홍주, 1992 : 123).

자녀 교육의 문제는 1)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 2) 사회화 주체의 이중성으로 인한 “불안정 사회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물리적 교육환경을 보면, 오늘의 농촌 현실에서 농민의 자녀들이 학교를 제외한 사회교육 시설을 접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가사노동, 심지어는 생산노동에 까지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교육에도 부실할 여지가 많다. 심리적 환경을 보면, 부모세대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생산노동의 과중함으로 인해 계

계적인 교육지도가 불가능한 현실이 문제였다. 또한 가족공간내에서 부모세대의 힘든 농사일을 보고 자녀세대가 공부에 전념할 수 만은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도 문제였다. 도시로 이동한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1가족 2가구”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교육비의 문제²⁶⁾, 자녀 뒷바라지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교육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은 가계 압박을 가져오고, 따라서 경제활동을 다양화하여 소득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과도한 자기 착취의 노동형태를 감수해야 하는 순환고리를 이루는 것이었다. 한편 불안정 사회화의 문제는 학교교육 내지 대중매체의 도시편향적 사회화 과정과 농민의 생존 현실과의 괴리에 의해야기되고 있다. 이를 테면, 가족의 개념에 대한 공식기관의 교육은 정서적 안정의 단위로서 “따스함”, “포근함” 등의 이미지를 심어주지만 가족이 생산의 주체로서 작업장인 농촌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이러한 격차는 불안정 사회화로 이어져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일탈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계승의 문제는 1) 농업위기의 현실을 반영하여 건강한 농민의 충원기제가 붕괴되는 현실, 2) 부모-자녀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적 수단인 상속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민의 충원문제는 직업으로

26) 1990년 현재 농가의 가계규모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서 가계비 지출의 수위이며, 이 수치는 도시가구의 8.1%보다 높은 수치이다(통계청, 1993 : 153). 특히 농가의 경우 자녀의 연령단계에서 교육을 받는 자녀가 있는 농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해당 농가의 교육비 지출은 매우 높은 수준일 것이다. 예컨대 조사지역의 한 사례는 도시로 이동한 자녀가 모두 4명(고등학교 2명, 대학교 2명)인데 이들의 등록금, 생활비, 거주비 등을 포함한 교육비용은 전체지출(16,310천원)의 66%(10,800천원)를 차지하고 있었다.

27) 1994년의 한 조사분석에 의하면 농촌 청소년 1,523명(남 839명, 여 684명)에게 장차 갖기를 원하는 직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겨우 2%(남자 3%, 여자 0%)만이 농업을 선택하고 있었다(이대 농촌문제연구소, 1994). 한편 1993년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세대 농민에게 자녀나 마을의 청년이 농업외의 직업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이농을 권장한다는 응답이 전체(540명)의 80.4%로 나타났으며, 권장의 이유는 67.5%가 농업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김일철 김홍주 외, 1993).

서 농업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되고 있다. 계승의 주체인 농촌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자녀의 농업계승을 바라지 않는 것과 있으며, 나아가 도시로의 이동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²⁷⁾ 결혼은 가족 형성의 시발점이자 사회 성원 충족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농촌 결혼시장의 혼란은 그나마 남아 있는 농업후계자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농가의 계승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위기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도시편향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가족질서의 유지와 성별·연령별 위계적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물질적 장치는 토지와 가계의 상속이라는 도구적 수단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농민가족은 1) 농업위기에 의해 농업과 농사기술의 계승이라는 가족관계의 도구적 기반이 약화되어 있고, 2) 가족전략 차원에서 장남을 비롯한 자녀의 적극적인 이동에 의해 가계계승의 공간이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3) 재산상속 자체도 부모세대의 토지소유 규모가 영세하고 일부 도시근교를 제외한 대다수 농촌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이념적 활동의 도구적 수단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부모세대는 자녀를 위한 희생의 연속인 개인생애 *life-course*에도 불구하고 계승의 주체이기 보다는 국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농촌에서 노인세대는 산업화의 전환비용을 담당해 왔을 뿐 만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세대를 위해 자기착취의 일생을 보내온 집단 *cohort*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부양의 혜택에서도, 국가복지의 수혜에서도 소외되어 박탈감을 지닌 채 스스로의 생계를 위해 또 다시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여기에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가족문제의 주요한 측면이다.

이상의 농가재생산주기는 사실 어느 한 단계에 서라도 차질이 있으면 가족생활의 연속성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의 농민가족은 어느 한 단계도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만큼 재생산활동의 불안정이 심각하다는 것이며, 이는 곧 전체 사회재생산의 위기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IV. 가족복지의 방향

1. 농민가족복지의 실태와 문제

우리의 사회복지는 70년대 후반까지 사회 성원의 복지욕구의 해결을 가족과 시장기능에 맡기는 자유방임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다가 80년대 중반에 와서야 국가개입에 의한 복지정책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접근방식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철저하며, 그나마 실시여건을 빌미로 도시편향의 지역성을 특징으로 한다. 산업화의 주체로서, 그리고 그 희생자로서 가족생활의 물질 기반이 크게 훼손된 농민은 정당한 복지욕구에도 불구하고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가족정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보호의 수준에서 보여주는 복지수혜의 도시편향을 살펴보자. 현재 농민가족에 대한 복지는 공적부조의 형태로서 생활보호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를 테면 탁아시설과 노인복지회관, 부녀상담과 여성보호시설 등은 전국 농촌에 하나도 없으며, 사회복지관도 1990년 현재 1개소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

면에 농민의 복지욕구와 이의 해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도시민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보호시설, 즉 고아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등 만이 점차 농촌지역으로 이전되는 형편이다(조홍식, 1992 : 270~271).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에서 유일하게 가구단위의 보호를 지향하는 생활보호사업도 1)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2) 수혜 대상의 한계, 3) 구호수준의 문제 등으로 인해 농민의 주관적·객관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흡하다.²⁸⁾ 보사부(보건사회통계연보, 1992)의 통계에 의하면 1991년 현재 절대빈곤을 경험하는 생활보호대상 농가는 391,258호(거택보호가구 112,297호, 자활보호가구 278,961호)로서 전체 농가의 23%에 해당하는 데, 이들에 대한 구호수준을 보면 최저의 생계유지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테면 거택보호자에게 매월 1인당 43,000원이 지급되는 데, 이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90)에서 계측한 농가의 일인당 매월 최저 생계비인 71,315원의 60.3% 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의 생활보호라는 수혜를 받지만 실제의 생활은 가족생활의 질 *quality of family life*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절대빈곤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의 점을 두고 본다면 농가는 1) 산업화 과정의 희생체로서 농가경제의 악화로 나타나는 물질 기반의 침탈과 더불어, 2)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요구인 복지욕구마저 외면당하고 있기에 재생산 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이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업생산의 위기로 인한 가족생활의 물질 기반이 훼손된 상태에다 이의 보상 체계인 의도적 가족정책의 부재로 인해 출산과 이동 양육, 노인부양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농가는 가족원 개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가족 재생산 주기 *family reproduction cycle*의 연속성이 와해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복지정책에 내재된 논리로 농가의 생존현실과 커다란 격차를 이루는 규범으로서 이데올로기적 통제장치로 작동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²⁹⁾ 우리의 가족복지 관점은 구조기능주의 가족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복지시책의 기본목적을 “건전 가정의 육성”과 “가족의 복지기능 강화”에 두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은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곧 1)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족 자체가 사회의 통합과 유지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한다는 것이며, 2) 그 방향은 전통적인 가족가치에 기반하여 가족부양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모아지고, 3) 이를 통해 가족의 복지기능을 더욱 강조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논리에는 가족이 어디까지나 사회적 영역 *private spheres*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 자체를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이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가족관이 표출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가족원들만을 보호하고 교육하여 가족기능을 정상화하는 데로 모아지는 것이다.³⁰⁾ 그러나 기능론적 시각에 의거하여 가족

2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연명(1991), 정명채(1992), 조홍식(1992)의 연구를 참고할 것.

29) Rapp(1982)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가족은 전통적 규범 *norm*과 생존현실 *reality survivable*에 큰 간격 *huge gap*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한 가족원, 특히 여성의 고통이 가중되어 가족변화(독신, 이혼의 증가 등)와 가족관계의 갈등구조의 현상화라는 가족문제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여준다고 한다.

30) 이러한 접근 방식 때문에 우리의 가족정책은 가족을 위해 분명한 의도로 시행되는 의도적 가족정책 *explicit family policy*보다는 공적부조, 이동복지, 부녀·노인복지제도와 같이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시행되어 가족에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의도적인 가족정책 *implicit family policy*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체를 사회의 통합요소로만 파악한다면 가족내의, 그리고 가족간 *families*의 다양한 갈등구조를 포착할 수 없으며, 모든 가족원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인간적인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복지욕구는 은폐되어지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족문제의 특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에 기반한 가족복지의 방향설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가족복지의 방향

우리의 농민가족은 1) 가족변화를 유도하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는 적응체제로서 특징을 지니며, 2) 이에 따라 변화의 영역도 형태·행동·가치의 측면만이 아니라 가족생활 전반과 이의 물질 기반(생산체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3) 가족변화가 생산영역의 위기에 대해 소유자원(특히 가족노동력)의 과착취 *over-exploitation*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위기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가족이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농민의 가족문제는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는 개인 차원의 일탈문제가 아닌 구조적 차원의 모순구조가 반영된 관계에서의 문제 *question*이고, “문제가 있는 가족”만이 아니라 농민가족 모두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농업지배·가족지배의 높은 강도에 의해 가족생활의 물질적 기반이 훼손되고, 재생산의 주기가 와해되면서 농민이 고통을 받는 상태가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문제해결의 방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를 제시하고 있다. 농민가족이 산업화의 기반이었으며 이의 결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문제의 해결은 바로 산업화 추진의 주체였던 국가와 최대의 혜택을 받았던 자본부문에서 구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족자원이 모두 고갈된 농민가족에게 문제의 자율적인 해결을 강요한다면 농민 집단의 좌절감, 고통, 소외의 가중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격심한 저항 내지 농민 집단의 해체를 가져와 전체 사회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사회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가족복지의 방향을 간단하게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복지의 유용성에 대한 정치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은 생산영역에서 분리된 소비의 단위만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이면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력을 생산/재생산하는 일차적인 소재지이다. 따라서 복지선진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족의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국가의 복지 역량을 가족에 집중시키고 있다.³¹⁾ 이러한 유용성은 농민가족에게 더 강조될 수 있다. 즉, 가족이 생산과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장(場)인 농민에게 가족복지의 시행은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며, 노인집단 자체가 가족으로 구성된 농가의 경우 가족복지가 곧 노인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부양책임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정치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가족복지의 유용성을 강조된다면, 이는 또 다시 가족문제의 발생으로 이어

31) 에컨데 스웨덴은 일찍이 Myrdal 등의 이론에 따라 인간 자본에 대한 집중 투자가 국제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라 보고 가족정책을 핵으로 하는 이른바 생애주기 *life-cycle* 중심의 사회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Esping-Andersen, 1992), 유럽공동체의 경우 결혼의 근원은 가족에 있다는 사실에서 “가족정책은 공동체내의 모든 정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장현섭, 1994).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복지를 국가의 자유방임적 복지체제를 은폐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로서의 가족을 위한 복지 *welfare for the family as a whole*” 개념에 기반하여 국가의 의도적 복지정책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문제가 사회적 산물임을 인정하여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이나 가족원들을 국가 차원의 사회권 *social rights*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는 시행의 주체가 국가라는 “국가복지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데³²⁾, 이는 1) 문제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만이 아닌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도적 가족정책을 제도화하고, 2) 그 제정을 조세로 충당하며, 3) 관리와 행정을 국가가 담당한다는 뜻이다. 개별 가족이 담당하는 재생산활동, 즉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 등의 결과는 가족차원을 넘어 사회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양육과 교육은 장차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에 공공재 *public goods*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노인집단은 사회재생산에 필요한 물적 조건의 생산노동에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인간적 삶을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만 묻고 있는 것은 사회차원의 책임방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도덕성 강화 등과 같은 운동 *movement* 차원을 벗어나 정상적인 가족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1) 출산과 양육

의 사회화 방법, 2) 자녀교육과 청소년의 불인정 사회화 *socialization*를 최소화하는 방법, 3) 농업 생산이나 가계의 계승을 유지하는 지원책, 4) 노인부양의 사회적 지원망을 강구하는 방법, 5) 지역사회복지와 연계시키는 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에 대한 가족 자체의 해결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압력만을 가중시키는 기존의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가족생활의 물적 기반이 와해된 농민가족에게 더욱 더 심한 좌절감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V. 맺는말

이상에서 논의한 농민가족의 변화와 문제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1) 한국사회의 가족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핵가족화로 귀결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2) 가족은 계급·성·연령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경험되는 공간이고, 3) 가족문제는 전체 사회의 모순구조가 반영되어 가족들과 가족원간 *families*에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관계에서의 문제 *question*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복지접근은 가족을 위한 복지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우리의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제 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농민가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생활의 물질적 기반이 불안정한 여타 계층, 특히 도시 빈민, 노동자 가족 등도 생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전략의 과정에서 왜곡된 형태의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의 가족변화는 외형적인 측면의 핵가족 형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변

32) 이러한 복지 욕구는 일반 농민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이를 테면 1993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촌의 노인집단에 대한 부양의 방법에 대해 전체(540명)의 47.8%가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한 부양을 제시하고 있다(김일철·김홍주 외, 1993).

화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다. 가족문제도 사회구조의 모순이 반영되어 가족들과 가족원간에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관계에서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홍주, 1993).

결국 한국의 가족문제는 우리사회의 정치·경제·사회의 제반 특수성이 혼합화되어 나타나는 유난히 복잡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간의 관계에 있어 국가와 자본의 가족지배라는 계급모순과 가족내 구성원 간의 성과

연령에 기반한 모순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는 가족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에 있어서도 가족생활의 다양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가족복지 개념에서 나아간 새로운 복지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터하여 건강가족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연명. 1991. “농촌복지정책의 현실과 과제.” 농민과 사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 (가을호).
- 김익기. 1991. “한국의 이농현상과 농촌의 구조적 빈곤.”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 창간호.
- 김일철·김태현·김홍주. 1993. 한국농민의 희망과 불안 -1992년 한국농민의식조사-. 서울 대학교출판부.
- 김재홍. 1988. 농촌빈곤층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홍주. 1992. “현대계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가족문제.” 농촌사회 2.
- _____. 1993. “한국 가족문제의 특징 - 기능주의의 가족문제론 비판.” 한국 근현대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9집). 문학과 지성사.
- _____. 1994. “한국 농민가족의 변화에 관한 연구 -농민의 가족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 농림수산부. 각년도. 농림수산통계연보.
- 농협중앙회. 각년도. 농협연감.
- 보건사회부. 각년도. 보건사회통계연보.
- 안병철. 1989. “산업화와 가족형태: 비판적 고찰.” 사회변동과 사회과학연구 (홍승직교수회갑기념논총).
- 안호용. 1991. “한국가족의 형태분류와 핵가족화의 의미.” (최재석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한국의 사회와 역사. 일지사.
- 이대 농촌사회연구소. 1994. 한국 농촌 청소년문제의 현황과 대책.
- 장경섭. 1991. “가족문제.”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 _____. 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 -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15(가을호).
- 장현섭. 1993.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 근현대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39.
- _____. 1994. “현대 한국가족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 전전가정의 발전방향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 정명채. 1992. “농촌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 농촌사회 2집.

- 정명채 외. 1989. 영세농의 생활과 복지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홍식. “한국 농촌사회의 복지문제”. 농촌사회2. 일신사.
- 정지웅. 1989. 한국의 농촌 -그 구조와 개발-. 서울대출판부.
- 조홍식. 1992. “한국 농촌사회의 복지문제 -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
- 최재석. 1982. (개정)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통계청. 각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각년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 한국여성개발원. 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 _____. 1987a.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 농가주부들 중심으로.
- _____. 1987b. 농촌여성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
- Anderson, M. 1971 *Family Structure in Nineteenth Century Lancashire*,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Banaji, J. 1976 “Summary of Selected Parts of Kautsky’s The Agrarian Questia.” *Economy and Society* 5(1).
- _____. 1977 “Modes of Production in Materialist Conception of History.” *Capital and Class* 3-Fall.
- Bernstein, H. 1979 “African Peasantries : a Theoretical Framework.”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6-4.
- Cohen, N.E. & Connery, M.F. 1967 “Government Policy and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29 No.1(Feb.).
- Crow, G. 1989 “The Use of the Concept of ‘Strategy’ in Recent Sociological Literature.” *Sociology* 23-1.
- Esping-Anderson, Gosta. 1992. “Social Security Policies and the Swedish Model.” *Paper(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Seoul.
- Friedman, H. 1980 “Household Production and National Economy : Concepts for the Analysis of Agrarian Formations.”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7-2.
- Gittens, D. 1985. *The Family in Question-Changing Households and Familiar Ideologies*. London : Macmillan Education.
- Goodman, D. & Redclift, M. 1982 *From Peasant to Proletarian : Capitalist Development and Agrarian Transitions*. St.Martin’s Press.
- Greven, P.J. 1970 *Four Generations : Populations, Land and Family in Colonial Andover*, Massachusetts,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 Press.
- Hareven, T & A.Plakans (eds). 1987 *Family History at the Crossroads*.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 Horgan, D.P. 1985 “The Demography of Lifespan Transitions : Temporal and Gender Comparisons.” Rossi(ed.). *Gender and the Life Course*. New York : Aldine.
- Kamerman, S.B. & Kahn, A.J. 1976 “Exploration in Family Policy.” *Social Work* 24-6.
- Laslett, B. & Brenner, J. 1989 “Gender and Social Reproduction : Historical Perspectives

- tiv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 Morgan, D.H.J. 1985 *The Family, Politics and Social Theory*. London, Boston : Routledge & Keganpaul.
- Rapp, R. 1982 'Family and Class in Contemporary America : Not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Ideology,' Thorne & Yalom (eds). *RETHINKING THE FAMILY-Some feminist questions*. New York & London : Longman(권오주 외 역. 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 아카데미).
- Schmink, M. 1984 "Household Economic Strategies :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19 (3).
- Smith, D.S. 1973 "Parental Power and Marriage Patterns : Analysis of Historical Trends in Hingham, Massachuset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 Tilly, L.A. & Scott,J. 1975 "Women's Work and Family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7.